인권정보자료실
CPj.d.4

9 780138 097318

전자주민카드와 전자감시사회의 도래

인권정보자료실
CPj.d.4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전자주민카드와 전자감시사회의 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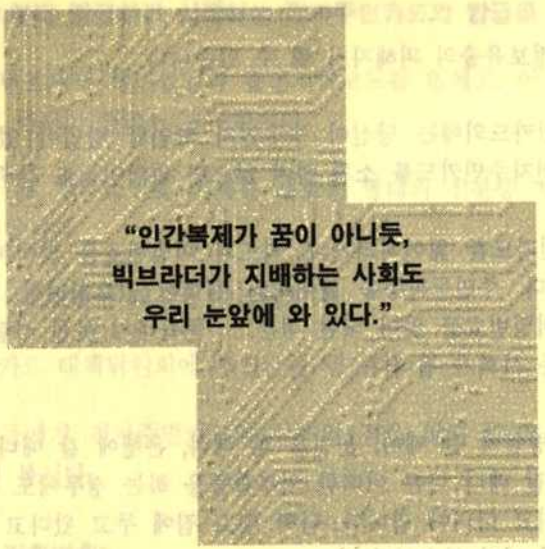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

과천시민의모임 / 과학기술노동조합 / 노동정보화사업단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와진보를위한지식인연대 /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인권운동사랑방 / YMCA /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 정보연대SING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청년정보문화센타 / 한국과학기술청년회 / 한국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언론위원회

전자주민카드가 도입되면 이렇게 됩니다

▶ 정부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게 됩니다.

▶ 당신의 모든 행적이 전자적으로 기록됩니다.

▶ 당신도 정보유출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전자주민카드외에는 당신이 누구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전자주민카드를 소지 하지 않으면 위험인물로 간주됩니다.

▶ 전자주민카드를 잃어버리거나, 카드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 정말 큰일납니다.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린 경험이 없으십니까. 신용카드나 통장의 비밀번호를 잊어 버린 적은....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가기 힘든 사회가 됩니다.

▶ 당신은 병원에 갈 때나, 운전을 할 때나, 은행에 갈 때나, 취직시험을 보러 갈 때나 다른 어떠한 외부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전자주민카드를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깜빡 잊고 집에 두고 왔다고 해봐야 전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 만일 전산망장애가 일어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전산망장애가 복구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합니다.

▶ 지금까지는 병원에서 의료보험증만, 운전할 때는 운전면허증만 제시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무슨 일을 하든 주민등록증은 물론이고, 운전면허증과 의료보험증도 함께 제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렇 게 합 시 다

▶ 내무부, 정보통신부, 안전기획부, 경찰청에 전자주민카드를 도입하지 말라는 항의전화를 합시다.

▶ **1998. 10.부터 발급하기 시작하는 전자주민카드의 발급을 거부합시다.**

▶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과 출신지역코드를 없애고,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로 바꾸어 달라고 요구합시다.

▶ 사진과 이름, 현주소만을 기재한 새로운 형태의 신분증 제도를 도입하도록 요구합시다.

▶ 프라이버시보호법의 제정을 주장합시다.

▶ 전자주민카드 대책위원회에 후원금을 냅시다.

▶ 주위사람들에게 전자주민카드의 잘못된 점을 알려 주고, 이 자료집을 함께 돌려 봅시다.

<관련기관 전화번호>

■ 내무부 지방행정국 731-2301 ■ 정보통신부 정책심의관실 750-2030
■ 안전기획부 3실장실 273-7140 ■ 경찰청 형사국 313-2545

<후원금 계좌번호>

■ 상업은행 167-07-123558 홍석만(전자카드)
■ 국민은행 812-01-0134-240 홍석만(전자카드)

자료집을 내며

전자사회, 전자컴퓨터사회, 전자컴퓨터통신사회, 영상정보사회, 그리고 정보고속도로건설, 세계화시대, 선진사회 -이러한 말이 우리로 하여금 21세기를 화려한 장미빛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다. 바야흐로 그러한데 우리는 97년 두가지 상충하는 흐름을 느낄 수 있다. 하나는 민주노총이 주도한 노동자대투쟁으로써 민중이 우리사회를 민주화의 한 단계를 올려 놓아 민중에 의한 민주화의 발전을 밝게 하고 있는가 하면, 정치권은 정경유착으로 추락의 나래를 접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가지 우리나라의 첨단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전자 컴퓨터 통신의 기술이 우리에게 민주화의 갈림길을 열어 놓고 있다.

즉, 세계에서 인권의 척도로는 3등국가의 그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주민등록증'을 전자 컴퓨터 통신 영상의 선진된 기술로 산뜻하게 '전자주민카드'로 만들어 놓겠다고 정부와 재벌기업이 발벗고 나섰다. 냉전시대이래로 너무나 익숙하여 그것이 인권을 침해하는지조차 잘 몰랐던 '주민등록증'과 전자카드의 시대로 너무나 익숙해 진듯한 전화카드, 지하철승차카드, 현금인출카드, 각종 현금환전카드, 도서관출입카드, 진찰권카드, 신분증카드, 호텔키카드 등등이 주는 편리성을 몽땅 합쳐서 '전자주민카드'로 통합시켜 보겠다는 야심찬 기획이 국가의 예산으로, 법적 근거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

세계에서 처음이라는 '선두; 단독'주자로서, 이것이 사람들의 사생활을 독자적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고 인격체로서 자기를 내세울 수 없을 만큼, 차라리 개가 목에 끈을 걸고 끌리어 다니는 형국처럼, 샅샅히 감시당하고 통제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면 복종하는 편리성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형국이고 사람 값하는 모양이라고 한다면야, 21세기는 바야흐로 기술적 야만의 시대를 맞이하는 것이 될 것이다.

국가가 하는 일이, 재벌이 하는 일이 모두 옳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군사독재시대'는 다시 올 수 없어도
'전자독재시대'는 곧 올 수 있다..."

알게 살아오지 않았는가! 그 옳지않은 것을 국민의 힘으로 막아내는 것이 민주화인 것이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언제 가만히 있어 성취되는 것을 보았는가?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문제를 일으킨다. 조금이라도 주춤하면 퇴보하고 퇴락한다. 정부가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주민카드제는 결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여기 작은 책만으로도 우선 충분히 알 수 있다. 우리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쓰여져서는 않되는 사유가 정당하게 여기 제시되어 있다. 이 책을 보시는 분은 복사를 많이 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이 일을 알게 합시다. 전자시대에 나올 수 있는 '독재시대-독재체제'를 미리 예방하는데 정신을 씁시다.

군사독재시대는 다시 올 수 없어도 '전자 독재시대'는 곧 올 수 있다. 우리가 각종 전자카드를 편리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사용해 간다면. 그리고 편리하다는 단 한가지 이유만으로 그 각종 카드를 한 장으로 만들었으면 하고 스스로 유혹한다면. (불 나 비)

1997. 4

김진균 (공대위 공동대표, 지식인연대 대표)

차 례 ▸▸

제1부 전자주민카드는 이런 것이다.

1-1 모든 개인정보가 통합된다.
1-2 경과와 시행일정
1-3 제주도 시범실시 계획과 일정
1-4 예산내역
1-5 무엇이 변하는가

제2부 전자주민카드, 무엇이 문제인가

1. 지금도 당신의 비밀은 공개되고 있다.

1-1 개인정보유출, 당신의 생명을 노린다.
1-2 허약한 국가전산망, 모든 것을 맡길 만큼 안전하지 않다.
1-3 잘못된 전산기록, 불행은 회복할 수 없다.

2. 피해는 더욱 확대된다.

2-1 개인정보가 통합되면 정보유출의 피해는 더욱 확대된다.
2-2 있으나마나한 보안대책, 비밀아닌 비밀번호

3. 정부가 당신을 감시한다.

3-1 전자주민카드는 통제사회의 비밀열쇠
3-2 근거법도 없고, 예산은 전용되고
3-3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구?

4. 엄청난 비용은 누가 감당해야 하나

◀◀ 차 례

5. 불편은 여전하다.

5-1 정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5-2 카드를 잃어버리면 집에서 쉬는게 낫다
5-3 어느날 갑자기 당신이 사라진다.
5-4 전산시스템이 고장나면 병이나도 참아야 한다.

제3부 모든 문제는 후진적인 주민등록증 제도때문이다.

3-1 주민등록증제도는 3류사회의 신분증명제도이다.
3-2 모든 개인정보유출의 문제는 주민등록번호가 있기 때문이다.
3-3 주민등록제도는 모든 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다.

제4부 다른 나라는 이렇게 하고 있다.

4-1 신분증명 '카드'의 도입을 막은 프랑스
4-2 신분증명제도가 없는 미국
4-3 호주와 뉴질랜드의 위대한 국민들
4-4 주민등록번호로 갈등하는 일본
4-5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도입에 저항하는 필리핀 국민들

제5부 공대위는 이렇게 주장한다.

부록 : 전자주민카드 10문 10답

제 1 부

전자주민카드는 이런 것이다

1-1 모든 개인정보가 통합된다.

1. 전자주민카드는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 국민연금증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증명서이다.
2. 증명서만 상호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각 증명서에 수록되어 있던 정보들도 모두 전자주민카드에 통합 수록된다.
3. 통합된 정보들을 담고 있는 각각의 전산망(의료보험전산망, 국민연금망, 경찰청 운전면허전산망)이 모두 카드 발급센타의 전산망에 네트워크로 상호 연결된다. 즉, 이제는 주민등록정보가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의료보험전산망이나 국민연금전산망을 통해서도 빠져 나갈 수 있게 된다.
4. 모든 개인정보가 통일된 원칙과 표준에 따른 디지털로 변환되어 저장된다. 표준화된 디지털 정보는 상호교환하고 복제하는데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표준화된 디지털 정보의 소유권은 정부나 공공단체에게 있다.
5. 3천4백만여명에 이르는 17세이상의 모든 국민이 전자주민카드를 발급받아야 하고, 이를 소지하여야 하며, 경찰의 제시요구에 응해야 한다.
6. 이후 신용카드 등과 통합할 계획이다.
7. 사회가 발전해 가면서 생겨나는 모든 IC형태의 카드(사무실출입카드, 교통카드 등)와도 통합될 것이다.

전자주민카드에 수록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다. 이들 정보외에도 통합 전산망에는 전화번호와 학력, 혼인관계 등이 더 기록되어 있다.

1. **공통사항** : 성명, 주민번호, 현주소, **전입일, 변동일**, 당시세대주주민번호, **당시세대주성명, 당시세대주관계, 변동사유**, 상태
2. **개인의료정보** : **혈액형**, 기록기관명, 기록일자, 약물과민사항
3. **인감**
4. **개인사항** : 성명, 주민번호, **호주성명, 호주와의관계**
5. **인적사항 1, 2** : 일자, 구분, 사유, 변경전
6. **이력사항 1, 2** : 주소, 전입일, 변동일, 당시세대주주민번호, 당시세대주성명, 당시세대주관계, 변동사유

7. **병역사항** : 역종, 군별, 군번, 수검일, 전역일, 전역사유, 전역근거, 병과, 주특기, 병과
8. **세대사항** : 세대주성명, 호주성명, 호주와의관계, 세대구성사유, 구성일자
9. **세대이력** : 주소, 전입일, 변동일, 변동사유
10. **운전면허** : 면허종류, 면허번호, 교부일자, 조건, 발행권자, 적성검사기간, **면허정지취소여부**
11. **의료보험** : 보험자명, **보험기관**, 관리번호, 구분, 구분항목, 대진료권, 중진료권, 피보험자성명, 주민번호,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피부양자성명, 주민번호**,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유효기간
12. **국민연금** : 최초취득일, 최초가입종별구분, **총불입액, 총가입액, 가입자관계, 급여종별**, 수급사유일, 수급증서번호, 카드최종수록일
13. **가족 1, 2, 3** : 세대주관계, 구분, 성명, 주민번호, 전입일, 변동일, 변동사유, 호주성명, 국외이주신고일자
14. **검증사항** : 주민등록보관지, 발행기관명, 기관코드, 발급일자
15. **지문**

1-2 경과와 시행일정

- 전자주민카드 계획안 확정 : 95. 4.
- 과천시 중앙동에서 시범사업 : 96. 4.
- 주민등록 개정안 입법예고 : 97. 3
- 국무회의 심의 및 임시국회 상정 예정 : 97. 4 ~ 5
- 시행령,시행규칙 및 사무처리지침 개정 : 97. 12
- **제주도 전역 시범실시 : 98. 4**
- **전 국민을 대상으로 카드발급 시작 : 98. 10.**
- **전국실시 예정 : 99. 10**

1-3 제주도 시범실시 계획과 일정

정부는 1997. 2. 27. 전국적 실시를 위한 준비를 위하여 인구이동이 적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제주도를 대상으로 1998년 4월부터 6개월동안 시범실시를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시범기간동안 제주도내 모든 행정기관과 은행, 병원, 교통경찰에게 운영용 단말기를 보급하겠다고 하므로, 사실상 제주도내에는 전자주민카드제가 전면실시되는 것이다.

하지만 전자주민카드를 전면실시하기 위하여는 제주도의 주민전산망, 의료보험 전산망, 국민연금망, 경찰청 운전면허망(모두 서울의 중앙전산망에 연결되어 있다)을 서로 연결하고, 데이터를 상호교환할 수 있도록 표준을 설정하여 변경하는 어려운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데 전산망을 어떤 방식으로 연결하고,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상호 교환할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한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의 상호교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무엇을 근거로 공공기관 사이의 개인정보를 상호교환하겠다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제주도 시범사업 실시일정은 다음과 같다.

- 제주도 추진기획단 설치 : 97. 3.
- 운영망 구축과 카드판독기 등 설치 : 97. 7. ~ 12.
- 주민홍보 및 사진, 인감, 지문 입력 : 98. 1. ~ 3.
- 카드 제조 및 발급 : 98. 1. ~ 3.
- 실제 운영 : 98. 3. ~ 9.

1-4 예산내역

- 총사업비 2,735억원(국비 1,842억원, 지방비 893억원) 예정
- 연도별 투자내역 : '96년 482억(국비 304억, 지방비 178억)
  '97년 624억(국비 360억, 지방비 264억)
  '98년 1,628억(국비 1,177억, 지방비 451억)
  * 96년과 97년의 국비예산은 「주민등록증 갱신사업비」임.
- 예산세부내역
  - 카드 구입 및 발급비 2,100억(국비 1,400억, 지방비 700억)
    발급센타 구축비, 운영망 구축비 등 635억

1-5 무엇이 변하는가

워낙 초유의 일이라 전자주민카드 이후의 생활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을 무척 어려운 일이다. 사실 정부나 시민사회단체나 전자주민카드시대 이후의 모습을 정확히 알고 알고 있지 못하다. 기업체나 출입통제가 필요한 비밀기관에서 일부 사

용해 본 경험은 있으나, 3,400여만명에 이르는 17세이상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전자카드를 보급·사용하는 것은 세계 최초의 일이기 때문이다.

과연 어느 정도의 효율성이 있을지, 추가비용은 없는지, 불법침해는 어느 정도 될지, 실제로 편리한 도구가 될지 등에 관하여 추상적인 추측만 있을 뿐이다. 하지만 단순히 종이신분증이 디지털 신분증으로 바뀌는 정도에 그치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흩어진 개인정보를 한데 모으는 '개인정보의 집중화', 집중된 개인정보를 네트워크로 주고받는 '정보흐름의 대량화'를 본질로 하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모습을 상상할 수는 있겠다.

- 신분확인은 전자주민카드로만 확인가능하게 된다.
- 주민등록등초본을 떼어 제출하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주민등록등초본대신에 본인이 직접 전자주민카드를 들고 필요한 곳으로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하는 새로운 불편을 겪게된다. 모든 정보가 전자주민카드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전자주민카드의 발급목적에는 정부의 확인작용을 거치지 말고 필요로 하는 당사자끼리 직접 확인하라는 것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은 피할 수 없다.
- 공공부분뿐만 아니라 은행 등의 민간부분에서도 카드판독기가 대부분 설치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체에서 직원들의 출입통제용으로 전자주민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출퇴근현황, 자리이동상태 등의 근무형태가 낱낱이 전자적으로 기록될 수 있게 될 것이다.
- 각 행정부처는 상호연결된 전산망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직접 입수할 수 있으므로 행정효율은 좋아질 것이나, 잘못된 정보가 입력되어 있을 경우의 위험도 증가하게 된다. 각 행정부처의 이익은 막대하나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편리함은 그다지 크지 않다. 우선 하나의 증명서만을 소지하면 되는 편리함은 분실의 위험을 생각하면 편리하다고만 할 수는 없다.
- 주민등록증을 위조할 가능성이 대폭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위조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신뢰가 큰 만큼 잘못되었을 경우의 위험도 증가하게 된다.
- 모든 경제행위에 기초가 되는 신원확인과 신원확인을 기초로 하는 거래행위가 전자주민카드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제 2 부

전자주민카드, 무엇이 문제인가

"전에는,
은행직원 한 명만 알면 어떤 사람의 모든 신용상태를 알 수 있고, 경찰관 한 명만 알고 있으면 모든 국민의 전과기록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제는,
주민카드 발급센타의 직원 한 사람만 알면, 어떤 사람의 주소, 가족관계, 직업, 소득, 그리고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있다"

◀ 휴대용 카드판독기에서 개인정보가 주루룩 나오고 있다.

1. 지금도 당신의 비밀은 공개되고 있다.

1-1 개인정보유출, 당신의 생명을 노린다.

한때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한영씨 사건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교도소 직원이, 주소는 경찰전산망에 수록된 것을 경찰이 심부름센터에 알려주어 결국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이처럼 개인정보의 유출은 개인의 생명까지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대부분의 개인정보는 1차적으로 국가기관에 수록된 정보들이 유출되고 있어 정부기관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래는 국가기관에 수록된 개인자료들이 유출되어 피해를 입은 몇가지 대표적인 사례이다.

피해사례 1. 국가기관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1992. 9. 16. 범죄자는 소위 '러브호텔'의 주차장에 있는 차량의 번호를 보고, 자동차관리전산망에서 차량소유자, 주소, 전화번호를 알아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1994. 4. 심부름 센터 업주에게 뇌물을 받은 경찰과 전화국 직원 35명이 주민등록을 조회해 주거나 전화 가입자 주소를 확인해 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었다.
1994. 6. 공무원들이 국세청, 서울시 등 관공서 컴퓨터에 들어 있는 일반 시민들의 신상기록, 소득세 과세 자료를 빼돌리다가 검찰에 적발되었다.
1996. 김모 여인은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남편을 피해 수십군데로 피해 다녔으나,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남편이 어떻게 알아 내는지 반드시 알아내서 가는곳마다 쫓아와 폭행행위를 계속하였다. 김모여인은 경찰에 호소하였어도 해결이 되지 않자, 결국 호주로 밀항하여 난민구호요청을 하게 되었다.
1997. 3. 심부름 센터에서 뇌물을 받은 전화국직원이 개인의 통화기록, 전화번호 등의 자료를 넘겨주어 구속되었다.
1997. 3. 부산 남구청 청소과 직원이 인적사항과 차량정보를 신용조사업자에게 돈을 받고 알려 주었다.
1997. 3. 초등학교의 기능직 공무원이 학교전산망에서 초등학생의 이름과 주소, 부모의 직업과 전화번호 등을 빼내 판매하였다.

또한 정치권에 의해 개인정보들이 악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다..

피해사례 2. 정치권에 의한 개인정보의 악용
1992년 14대 선거에서 종로의 여당의원은 대학생들만을 산출하여 자신의 의정발언집을 보냈다. 같은 선거때 영등포에서 여당의원이 성년의 날에 성년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만 축하의 편지를 보냈다. 이때 여당의원들은 의료보험전산망의 개인정보를 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대통령선거때 도청으로 문제가 되었던 '부산 기관장 대책회의(이른바 초원복집사건)'에서 김기춘 전법무부장관은 "이웃동네의 한 면이 전부 '현대'야, 거제도가 본적인 놈들 전부 컴퓨터로 뽑아 가지고 그놈들 전부 휴가를 보내"라고 말하여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렇듯 전산망이 통합되어 있지 않은 지금도 국가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수시로 유출되어 심부름센터나 몇몇 기업들에게 넘겨지고 있다.

1-2 허약한 국가전산망, 모든 것을 맡길 만큼 안전하지 않다.

행정망의 고장율은 선진국의 10배이상으로 추정

행정전산망은 1달에 500여건 이상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가 있기도 하는 등 결코 안정된 전산망이라 할 수 없다. 시스템의 입출력장치, 단말기장치, 통신회선장애와 소프트웨어의 불안정 등 현재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장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망의 고장율은 선진국의 10배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기술력이 모자라 전자주민카드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을 100으로 할 경우 7.3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는 국내의 기술력으로는 도저히 전자주민카드와 같은 방대한 규모의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능력이 되지도 못한다.

행정망뿐 아니라 국가전산망이 전체적으로 잦은 고장으로 시비를 일으키고 있는데 금융망, 증권전산망 또한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어 결국 손해는 국

민이 감수해야 한다.

행정망의 고장으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거나 발급이 지연되는 사례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김모씨의 경우 경찰에 의하여 조사할 것이 있다고 연행되었으나, 경찰전산망의 고장때문에 신원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몇 시간씩 경찰서에 붙잡혀 있었던 사례도 있다. 또한, 은행감독원에 의하면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돈을 찾을 때 컴퓨터의 고장으로 돈은 나오지 않았는데 통장에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1992. 1.부터 1993. 10.까지 9억6천8백만원이라고 한다. 그리고, 1993. 11. 24. 금융결재원의 전산망이 1시간동안 고장이 나서 약70억원의 타행환이 처리되지 못해 애매한 기업이 도산할 뻔한 경우도 있었다.

1-3 잘못된 전산기록, 불행은 회복할 수 없다.

지난 1993. 6. 20. 지역의료보험료가 예고도 없이 많이 나와 담당부서에 가서 왜 늘어났는지 알려 달라고 한 사람이 있었다. 담당자는 컴퓨터로 조회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하였다. 담당자는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은채 '전산처리니까' 맞다고 주장하며, 근거를 찾을 수도 없다고 하여 이 사람은 그냥 돌아올 수 밖에 없었다. 1993. 12.경에는 은행의 지점에 대하여 만기일 적금에 대한 이자가 잘못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지점에서는 '우리는 아무도 내용을 모르고 본사에서 처리해 주는 컴퓨터 단말기대로만 하니 이의가 있으면 직접 본사로 가서 알아보라'고 하였던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잘못 기록된 전산자료에 의한 피해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데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전산망의 잘못을 발견한다는 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컴퓨터로 처리한 결과는 무조건 맞다는 인식으로 인하여, 정부의 어떤 행위가 컴퓨터로 처리된 것일 경우, 그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국민의 책임이 되어 버린다. 다음은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있다.

피해사례 3. 전산망 오류에 인한 피해
1988. 5. 22. 윤모씨는 경찰에 이유도 없이 압송되었다. 압송된 뒤에야 자신이 컴퓨터에 수배자로 나타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윤모씨는 2년전에 수배된 일이 있고 그 일로 형을 살고 나왔으니 풀어달라고 하였으나, **경찰은 컴퓨터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며 믿지 않았다.** 윤모씨는 2년전 자신을 직접 연행한 다른 경찰서 형사와 간신히 연결되어 풀려났다.
1989. 2. 이모씨는 신호위반으로 인한 범칙금을 일주일 뒤에 납부하였다. 그러나 93. 4. 적성검사를 받기 위하여 면허시험장에 갔는데, '범칙금을 미납하였으므로 면허정지 90일 처분을 받아야 면허증 경신이 가능하다'고 하여 3개월 면허정지를 당했다. 이모씨는 납부한 영수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 관할 경찰서와 수납은행에 확인을 하였으나 이곳에서도 당시 자료는 모두 폐기되고 없었다. 이모씨는 면허정지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1993. 2. 한 주부는 자신과 생년월일 및 한자이름이 같은 사람의 범죄로 수배자로 몰려 경찰에 두번씩이나 소환되었다.
1994. 1. 충남도 17개 고교의 입시시험에서 판독기의 이상으로 70여명의 합격자가 뒤바뀌었다.
1997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전산처리된 내신성적의 오류가 다량 발견되었다.

지존파, 그들은 모 백화점의 고객명부를 입수하여 범행에 이용하였다. 경찰전산망의 주소가 유출되어 살인까지 낳게 한 이한영 사건을 보라. 개인정보의 유출, 이젠 당신의 생명을 노린다.

2. 피해는 더욱 확대된다.

2-1 개인정보가 통합되면 정보유출의 피해는 더욱 확대된다.

전자주민카드제도가 실시되면 피해는 더욱 집중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 이유는 전자주민카드 한 장에는 그 사람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7개 분야, 41개 항목)가 담겨 있고, 엄청난 수의 관계자가 중앙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어,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보안체계를 세우더라도 수만대의 컴퓨터가 중앙컴퓨터에 접속되어 있어 개인의 자료들이 어디에서 유출되는지 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고 만다.

카드 발급센터에 설치될 중앙컴퓨터에는 5,000여 읍면동에서 15,000여대의 단말기가 연결된다. 최소한 2-3만여명의 하급 공무원이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발급센타의 중앙컴퓨터에 접속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열람할 수 있다. 하지만 컴퓨터에는 정보를 열람하였다는 사실만 기록되지, 공무원들이 주민등록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는 기록되지 않으므로 불법사용을 막지 못한다.

또한, 국민연금관리공단 본부와 29개 지역본부에 설치되어 있는 국민연금전산망이 카드발급센터의 중앙컴퓨터에 연결되게 되어 있다. 국민연금 전산망에는 40여개의 지부와 출장소에 설치된 단말기가 접속되어 있어 전국 어느 곳에서나 국민연금전산망에 접속하고 다시 국민연금전산망을 통하여 발급센터의 중앙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게 된다. 이 국민연금전산망에는 연금가입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근무처, 직위, 직위의 변동상황, 개인의 평균보수상황이 입력되어 있다.

의료보험의 경우, 420여개의 직장 및 지역 조합과 의료보험관리공단, 의료보험연합회를 연결하는 의료보험전산망도 발급센터의 중앙컴퓨터에 연결된다. 의료보험 전산망에는 보험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진료비, 본인부담금, 조합부담금, 심사내역, 진료내역 등이 수록되어 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 있던 주민등록정보가 전자주민카드 발급센타에 집

중되어 내부사용자는 물론이고 외부의 침입자도 전산망에 접근하기가 훨씬 쉬워지게 된다. 따라서 정보가 집중되어 있고 집중된 정보를 수십만명이 열람할 수 있으므로, 유출의 위험은 수십배 증가될 수밖에 없다. 또한 유출될 경우 유출의 규모도 대량이 될 것이다. 즉, 전자주민카드의 정보가 유출된다면 그 피해는 과거의 어떤 것보다도 더 클 것이다.

물론 지금도 자주 발생하는 잘못된 기록에 의한 피해도 전산망이 복잡해지면서 시정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아직 안정되어 있지 않은 전산망의 장애로 인한 업무정지의 피해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2-2 있으나마나한 보안대책, 비밀아닌 비밀번호

정부에서 발표한 전자주민카드의 보안대책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다.

1) 카드소지자만이 알 수 있는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등 몇가지 정보를 제외하고 비밀번호를 모르면 정보를 볼 수 없도록 한다.
2) 전산센터에 분실카드를 등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분실카드의 도용을 막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 즉, 분실되었다고 신고된 카드는 단말기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3) 카드 겉면에 화폐수준의 비표처리를 하여 카드의 위. 변조를 막는다.

물론 정부가 나름대로 최선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였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지만 2,700억여원의 예산중에 2,100억원이 카드발급에 사용되고, 나머지 돈만으로 시스템을 설치하고 소프트웨어를 제작하고 전산망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리고 남은 돈으로 보안대책을 마련하는데 사용할 예정이라면, 보안대책은 헛공론에 불과하다. 보안문제는 예산의 뒷받침없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CIA와 국방성의 컴퓨터까지 해킹을 당하는 마당에, 그들보다 기술수준이 미약한 우리 정부가 수만대의 단말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1억 9천만건의 자료의 관리와 일일 2백만건 이상의 자료변동 및 열람을 처리해야하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사실 우스운 일이다.
그리고, 만에 하나 해커나 혹은 유사시 적성국의 정보관련 무기에 의해 공격을

받았을 때 국가업무와 국민생활에 상상하기 힘든 혼란이 예상된다.

상호 연계되어 전국에 걸쳐있는 광범위한 통신망이 과연 공중통신망과 어느 한곳도 연결되지 않고 완전히 물리적으로 차단될 수 있겠는가? 공중통신망과 완전히 차단되지 않았을 때 이런 시스템이 전세계 하나 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세계의 해커들과 정보기관에 의한 해킹을 감수해야한다.

또다른 문제는, 전자주민카드의 경우 카드판독기가 있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열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전자주민카드를 분실할 경우 어떤 사태가 발생할 지 아무도 모른다.

비밀아닌 비밀번호

정부는 모든 전자주민카드에 개인만이 알 수 있는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그 비밀번호를 모르면 카드를 읽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실제로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방안이다. 전자주민카드는 모든 국민에게 강제로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관리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발급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비밀번호를 관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이렇게 비밀번호를 관리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결국 비밀번호를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비밀번호가 없는 전자주민카드가 다량 생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비밀번호가 있는 전자주민카드도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분실카드 등 사고카드 기록을 유지하여 사고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방안도 마찬가지이다. 전산센터와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전자카드 판독기가 설치될 예정이고, 이러한 판독기에서는 전자주민카드가 사고카드인지 여부를 판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전자주민카드 판독기는 공무원이나 은행직원이 소지하면서, 카드 소지자로부터 카드를 제시받아 컴퓨터의 판독기에 집어 넣은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는데, 카드 소지가가 창구안으로 들어가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창구직원에게 비밀번호를 불러 주어야 한다. 이것이 무슨 비밀번호인가.

3. 정부가 당신을 감시한다.

3-1 전자주민카드는 통제사회의 비밀열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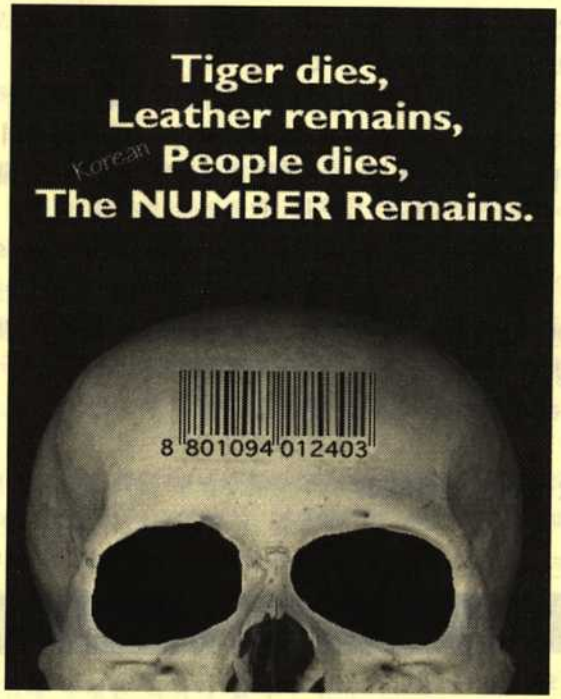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한국사람은 죽어서 번호를 남긴다."**

21세기의 빅브라더, 전자주민카드

주민등록증제도만 하더라도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지나치게 많은 국민들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어 인권후진국, 3류사회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전자주민카드제도는 더 많은 개인자료를 통합하여 상호유통시키고 관리하게 되

어 국제사회의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
정부의 선전과는 달리 전자주민카드제도가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있을뿐 아니라 전자감시사회의 첨병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자주민카드제도가 시행되면 개인의 모든 사회적 활동이 전자화된 기록으로 남을뿐만 아니라 언제나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조지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빅브라더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구심은 전자주민카드 추진기획단에 안기부 대공담당이 참석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감시와 통제의 목적이 없다면 보안에 대한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추진기획단에 참석을 해야지 대공담당자가 추진기획단에 참여할 이유는 전혀 없다.

또한 국가기관의 모든 암호자재(보안장비)는 국가안전기획부법에 의하여 국가안전기획부만 제작・공급할 수 있도록 법정되어 있다. 사실 안기부는 마음만 먹으면 국내의 어떠한 전산망에도 들어갈 수 있고 필요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전자감시사회는 우리의 눈앞에 다가와 있다.

3-2 근거법도 없고 예산은 전용되고.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주민카드제는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아주 많은 제도인만큼 충분한 국민적 토론을 거친 후에 시행하는 것이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원칙에 맞다.

또한,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인만큼 사전에 먼저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이 이미 수백억원의 예산을 사용하였다. 정부는 이제와서 「전자주민카드」의 근거법률이 아닌 주민등록법과 의료보험법 등 개별법만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통합전자주민카드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새로운 형태의 신분증이다. 이 신분증은 사실 주민등록증이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의료보험증이라 할 수도 없다. 각각의 증명서는 각각의 사용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법의 개정만으로 해결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이처럼 정부는 아무런 사전 홍보나 사업시행의 근거법도 없이 무조건 시범사

업을 시행하여 왔다. 1997년의 예산에 「전자주민카드 사업」이라는 항목이 없는데도, 정부는 360억원의 예산을 이미 책정해 놓고 있다. 이 예산은 주민등록증 갱신사업비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하지만 전자주민카드가 어떻게 주민등록증을 갱신하는 것인가. 예산회계법은 예산의 전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아무런 근거없이 예산을 전용하고 있다.

3-3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구?

정부는 전자주민카드제도가 경제개발기구(OECD)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자주민카드제도는 위 가이드라인의 어느 항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OECD의 가이드라인은 이렇다. 분명한 수집목적이 있어야 하며, 수집한 개인정보을 목적외 사용할 수 없으며, 정보주체의 분명한 동의하에 법에 따른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개인정보파일은 공개되어야 하고, 모든 국민은 자기정보열람권을 가져야 한다는 등이다. 이 원칙은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법률에 반영되어 있다.

첫째, 개인정보수집에 대해 정보주체의 분명한 동의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민등록증은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고 발급에 따른 제반의 절차를

프라이버시에 대한 OECD의 가이드라인

1. 정보수집에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2. 수집한 정보를 수집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3. 정보수집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4. 정보주체는 정보 공여를 거부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5. 개인정보 파일은 공개되어야 한다(비밀정보가 있어서는 안된다).
6. 정보주체는 자신의 정보를 언제라도 열람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OECD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정보에 대한 자기 통제권'**이다.
"자신의 정보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는 것이다.

거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따라서 현재 주민등록법에 기반한 전자주민카드제도는 개인의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정보수집 조항과 정보공여 거부권을 위반하고 있다. 법에 의하여 신고와 발급이 강제되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의 신고에 의한 정보만을 통합하는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불과하다.

둘째, 설사 "주민등록사항이나 운전면허, 의료보험 정보는 모두 국민 스스로가 전입신고서,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의료보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이미 동의한 사항"이라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 들인다 하여도, 이러한 신고가 자기정보의 상호유통과 상호통합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다. 전자주민카드의 실시를 위해 정부가 임의로 개인의 정보를 타기관에 공여한다면 정보수집 목적에 맞게 정보가 이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행동으로도 볼 수 없다.

셋째, 미국은 1988년에 기존의 프라이버시보호법을 컴퓨터의 연결행위 자체를 통제하는 내용의 '컴퓨터 연결(Computer matching) 및 프라이버시 보호법'으로 개정하였다. 이렇듯 정보를 통합하고 전산망을 상호 연결하는 것은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자체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전자주민카드제도로 정보를 통합하고 전산망을 상호연결하는 것은 정보를 새로 수집하는 행위와 같다. 따라서 주민등록법, 도로교통법, 의료보험법 등 기존 법률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서식 및 발급절차의 개정만으로 이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반한다.

넷째, 전자주민카드제도는 기본정보의 상호이용을 기본틀로 하고 있으므로, 이 제도하에서 각각의 개인정보는 본래의 정보수집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목적외 사용금지원칙에 반함이 분명하다.

다섯째, 비밀파일이 존재해서는 아니된다는 「Openness Principle」은 공안관련기관의 힘이 막대한 우리의 경우 특히 중요하다. 비록 전자주민카드와 관련된 전산망에 비밀파일이 존재하지는 않겠지만, 국가안전기획부와 경찰전산망에 국민이 모르는 개인신상정보에 관한 비밀파일이 있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고, 이러한 비밀파일은 통합전산망을 이용하거나 이와 연계함으로써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정보파일이 될 것이다. 정부는 전자주민카드를 시행하기 전에 국가안전기획부와 경찰이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와 사용목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자주민카드제도는 OECD권고안의 모든 조항을 위배하고 있다.

4. 엄청난 비용은 누가 감당해야 하나.

전체 예산 1조원, 1인당 3만원 !

정부의 계산에 의하더라도 전자주민카드를 추진하는 데는 총 2,735억의 예산이 든다. 이토록 막대한 금액을 필요로 하는 만큼, 사업의 타당성을 떠나 그 비용은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오며, 누구를 이롭게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2,735억원의 예산은 카드구입 및 발급에 2,100억, 발급센터 구축에 250억, 업무개발에 89억, 운영망 구축에 105억, 화상정보 구축에 170억, 기타20억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 사업비는 국고에서 1842억이, 지방비에서 893억이 사용된다.

내무부에서 주장하기로는 년간 등초본 1억 7천만통, 인감증명 5천7백만통을 발급하지 않게 되어 천억 이상의 예산절감과 5천명의 인원 감축을 이루어 낼 수 있다고 한다. 심지어 투자에 비해서 23.5배의 경제적 실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 일간지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전자주민카드 시행으로 인한 총 시장규모가 7,000억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하였다. 반도체 칩제조에 총3,000억원, 경찰과 시군구에 지급할 카드판독기 제조에 500억원, 카드 겉면인쇄에 1,800억원, 플라스틱 원판제조에 17억원, 카드에 수록할 사진제조와 입력기 부분에서 1,800억원 정도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총예산규모가 2,735억원인 것과는 현저히 차이가 나는데, 이는 정부가 부대시설에 관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거나 의도적으로 제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간지가 분석한 시장규모가 훨씬 실제 필요비용에 근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제적인 프라이버시 보호단체인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I)」의 전자카드

비용분석에 따르면, 호주는 훈련비용과 행정감독비용, 그리고 요원교체비용 · 적응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은채 발급 · 유지비를 적게 추정해 사업추진 1년만에 거의 두배로 비용을 재조정하였다고 한다. 영국의 내무장관도 신분카드 발급비용이 영국 정보기술센타가 추정한 액수보다 2배가 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우리 전자주민카드 사업예산항목에도 훈련비용이나 행정감독비용, 요원교체비용, 유지 · 적응비용 등의 부분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제대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1조원이상의 예산이 사용될 것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이 돈은 결국 전자주민카드사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국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전세계 어디에서도 시행이 된 적이 없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생길지도 모르는 추가 비용, 홍보 비용, 또 국민 혼란 및 불편 등은 수치로 환산하기조차 힘들다.

연간 재발급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카드 자체는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에 영구적일 수 없어, 정기적인 재발급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최초 발급비용이 2,100억원인 것을 상기하자). 전자주민카드를 분실하거나 못 쓰게 되었을 때의 재발급 비용도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예정이다. 현재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개인책임이라는 이유로 1만원의 재발급 비용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자주민카드 제도에서는 분실의 위험이 훨씬 커지고 재발급에 들어가는 비용도 크기 때문에 분실이나 파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3만원의 재발급 비용을 징수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분실 등으로 재발급하는 건수가 주민등록증의 경우 연간 300만 건 정도이고 운전면허증의 경우 70만건에 이른다. 따라서 신규발급이 아닌 재발급 건수만도 연간 최소 300만건에 이를 것이고, 이 재발급 비용도 180억원에 달해,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다.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장차 각종 자격증과 금융기능까지 전자 주민증에 통합할 것을 검토한다고 한다. IC 사업은 2000년대에 3조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종 사업 분야이다. 전자, 정보통신, 망관리 사업자, 신용카드 회사들은 벌써부터 군침을 흘리고 있으며, 각종 사내 신분카드, 버스카드에 이어 전자주민카드는 대기업에 안정된 시장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카드의 핵심 기능은 모두 외국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고 외국업체에 대한 시장개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서,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으로 다국적기업과 대기업의 안정된 이윤 창출을 위해 국민이 희생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전자주민카드,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5. 불편은 여전하다.

5-1 정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무인발급기를 설치하여 국민이 주민등록등초본을 떼러 동사무소에 가지 않도록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전자주민카드가 국민의 편익을 위한 제도라는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무인발급기가 설치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항목에는 무인발급기 설치항목이 아예 들어있지도 않다. 워낙 비용이 많이 드는데다, 보안문제에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무인발급기는 설치되지 않거나, 형식적인 설치에 그칠 것이다.

따라서 전자주민카드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으러 동사무소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전자주민카드의 효용을 과장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왜냐하면 무인발급기는 오로지 동사무소에만 설치가 될 것이며, 불필요하게 각종 증명을 요구하는 행정절차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전자주민카드가 도입되더라도 여전히 등초본을 떼러 동사무소에 가야 하기 때문이다.

5-2 카드를 잃어버리면 집에서 쉬는게 낫다.

누구나 주민등록증을 잃어 버릴 수 있다. 매년 약 300만건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고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전자주민카드가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자주민카드 분실로 인한 불편함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가 될

것이다.

또한, 누구나 깜빡 잊고 전자주민카드를 놓고 다닐 수 있다. 이런 일은 하루에도 여러 번 일어난다. 하지만 전자주민카드가 없으면 관공서에 출입할 수 없고 은행업무도 볼 수 없고, 좀 더 먼 미래에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이 전자주민카드에 통합되어 모든 경제활동이 전자적인 카드 하나로 이루어지면(정보의 특성상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정말이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정부는 2-3일내에 재발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분실된 주민카드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이를 무효화시키고 새로운 데이타를 기초로 카드에 입력하고 이를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는데 불과 2-3일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넌센스다. 그리고 2-3일밖에 걸리지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그 사람은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제 전자주민카드를 깜빡 잊거나, 분실하거나, 비밀번호를 잊어 버리거나 하는 사람은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 똑똑한 사람들만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5-3 어느날 갑자기 당신이 사라진다.

영화 Net의 한 장면.
주인공에 대한 정보가
심각하게 왜곡되어
개인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섬뜩한 정보사회의
모습을 보여준다.

전자주민카드제도는 사회의 모든 시스템을 전자적으로 통제하는 기반시설이 된다. 모든 국민은 전자주민카드를 기초로 경제활동을 하고, 신원확인을 받게 되는데, 갑자기 아무런 이상도 없는데 전자주민카드 판독기가 자신의 전자주민카드를 읽지 못할 수도 있고, 갑자기 도난카드라거나 불량카드라고 답할 수 있다. 실제로 전자 사원카드를 도입한 기업체에서는 이런 일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전산조직이 워낙 거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이유를 찾을 수도 없게 된다. 담당자는 단지 「컴퓨터가 주민카드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 나는 모른다」고 할 뿐 아무런 답도 주지 못한다.

'네트'라는 영화의 산드라블록처럼 당신도 어느날 이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이 될 수 있다.

5-4 전산시스템이 고장나면 병이 나도 참아야 한다.

지금의 행정망 고장율이 선진국의 10배가 넘는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기술력으로는 전자주민카드의 전산시스템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럴 경우, 병원에서 의료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되고,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발급도 받지 못하게 된다. 시스템이 몇시간안에 복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몇시간동안 수만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한다.

몇시간동안 줄을 서서 기다리며 발급을 받아야 한다면 과연 이 제도가 편리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제 3 부

모든 문제는
후진적인 주민등록증 제도때문이다.

3-1 주민등록증제도는 3류사회의 신분증명제도이다.

신분증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를 상상하기란 쉽지 않다.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방글라데쉬와 같이 신분증명제도 자체가 없는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Identification card)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신분증명제도가 그 나라의 인권수준과 민주화수준을 반영하는 척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주민등록제도는 3류사회의 신분증명제도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주민등록을 하지 않으면 법에 의해 처벌 받는 강제등록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민등록이나 신분증명서 발급은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법으로 처벌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다만 복지혜택을 부여하지 않을 따름이다. 오로지 정치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몇몇 중남미와 아시아국에서 우리와 같은 강제적인 주민등록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말해 우리의 주민등록증제도는 정치후진국 수준의 신분증명제도이다.

둘째, 서비스 제공 기능이 없다. 주민등록증의 경우 오로지 신분증명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특정한 서비스의 제공 없이 신분증명만을 목적으로 하는 증명서는 여권을 제외하고는 사례가 많지 않다. 이 때문에 미국이나 호주의 경우 주민등록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그 대신 의료보험증(Medicare Card)과 사회보장증(Social Security Card)으로 신분증명서를 대신하고 있다.

셋째, 지나치게 많은 개인자료들을 요구한다. 주민등록증에는 사진, 주민등록번호, 본적지, 병역관계, 거주지 변경사항, 지문등이 실리며, 17세가 되어 처음 주민등록을 할 때 주민등록표상의 수록항목은 무려 141가지나 된다. 실제로 정부는 주민등록증의 10여가지 개인자료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141가지나 되는 온갖 개인자료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다.

넷째, 국가에 의해 끊임없이 감시받아야 한다. 내무부에서는 주민등록상의 141개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지만, 안기부와 경찰은 공안전산망을 통해 이보다 더욱 많은 양의 개인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많은 사람은 믿고 있다. 윤석양 이병이 폭로한 바에 의하면 보안사는 정치인과 재야인사, 교수 및 특정계층시민들의 신상자료를 비밀스럽게 수집하고 있었고, 일반시민들의 자료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었다. 이들 자료의 출발점은 주민등록정보이다.

3-2 모든 개인정보유출의 문제는 주민등록번호가 있기 때문이다.

인간 바코드, 주민등록번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주민등록번호가 매겨져 죽을때까지 갖고 다녀야 하는데,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모든 피해는 바로 이 주민등록번호에 의해서 발생한다. 위의 유출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든 개인의 자료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 분류되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주민등록번호는 사실 모든 상품에 고유번호를 붙여놓고 식별하는 바코드 시스템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상품의 바코드를 알면 그 상품의 성격을 알 수 있듯이, 이제는 국민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록한 전산망이 상호 연결되고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3-3 주민등록제도는 모든 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다.

열손가락 지문을 찍어야 하는 나라

일본은 외국인에게 지문날인을 요구하고 있고, 많은 재일교포들이 일본당국의 부당한 처사에 맞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재일교포들의 싸움에 지지와 찬사를 보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국민이 17세만 되면 열손가락 지문을 찍어 국가에 보관하고 주민등록증에도수록하고다니고있다. 결국범죄자나외국인들에한정하여받는지문을 모든 국민이 그것도 열손가락을 다 찍어야 되는 우리의 처지는 정부에 의해서 범죄자로 대접받거나 외국인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진국에서 지문은 범죄자, 외국인이나 찍는 것이다.

한국의 모든 국민은 만 17세가 되면 누구나 지문을 찍어서 국가에 넘겨주어야 한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예비 범죄자란 말인가?

제 4 부

다른 나라는 이렇게 하고 있다.

미국에서 신분증으로 쓰이고 있는 사회보장카드 (social security card). 이름과 서명, 일련번호 만이 적혀 있을 뿐, 본적, 주소, 주민등록번호, 지문 등은 찾아볼 수 없다.

4-1 신분증명 '카드'의 도입을 막은 프랑스

1970년 후반까지 프랑스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우리와 비슷한 주민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다녀야 했다. 이것이 위조하기가 쉽자, 1979년 내무성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보다 통합적인 신분증을 만들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카드가 테러를 방지하고 법 집행을 위한 목적으로 쓰일 것이며, 최신의 레이저 기술을 도입해서 제작할 것이라 선전했다.

그러나, 1981년 사회당이 집권하면서 이 신분증 제도의 운명은 역전되었다. 컴퓨터로 처리된 신분증명이 개인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미테랑 정부는 이 제도의 실시를 철회하였다. 이후 몇 차례 보수정권에 의해 제기됐지만, 프랑스는 여전히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신분증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4-2 신분증명제도가 없는 미국

미국의 경우에는 신분증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개인의 자유와 국민주권에 반한다는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도입할 엄두조차 못내고 있다. 사기, 탈세, 그리고 불법이민에 대한 원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행정부는 계속 신분증제도 실시를 거부해 왔다. 기존의 사회보장번호를 주민신분증의 지위로 확대시키자는 주장도 1971년 사회보장국 사회보장번호사업단에 의해 거부되었다. 1973년 전자화된 개인정보시스템에 대한 보건, 교육, 복지성 자문위원회는 전국민적 신분증명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결론지었다. 1976년 허위신분증명에 대한 연방자문위원회도 이러한 발상을 거부했다. 카터, 레이건, 클린턴 행정부 모두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신분증명제도를 만드는 것을 반대한다고 거듭 확인해 왔다.

4-3 호주와 뉴질랜드의 위대한 국민들

80년대 중반 호주에서는 전국적인 차원의 신분증제도 실시 문제를 두고 국민전체가 이 제도의 시행에 반대하며 정부와 격렬한 마찰을 빚었다. 1986년 호주정부는 '오스트레일리안 카드'라고 불리는 전국민 신분증제도 실시를 위한 입법을 예고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최근 호주의 역사에 있어서 단일 사안으로서는 가장 커다란 국민적 저항을 야기했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고, 정부 내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분열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이 제안은 결국 그런 식의 반감만을 일으킨 채, 1987년 폐기되었다.

1991년에는 뉴질랜드 정부가 키위 카드라는 부문별 주민신분제도를 도입하려 했다. 그러나, 이 역시 국민들의 분노를 야기했다. 법적 보호도 없이 시행된 이 카드가 사회적 소수집단들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호주의 경우와 같이 뉴질랜드 국민들은 승리를 하여, 결국 카드시행 계획은 포기되었고, 의료혜택 목적의 카드만이 만들어졌다.

4-4 주민등록번호로 갈등하는 일본

일본은 주민번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전산화도 되어 있지 않다. 최근에 주민등록전산망과 주민기본대장코드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있다.

일본 자치성은 주민등록장부를 이용, 전국민에게 일생동안 변하지 않는 10단위의 개인번호를 부여해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체들이 컴퓨터로 일원 관리하는 「주민기본대장번호제도」를 98년 실시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전국민 고유개인번호제는 간단히 얘기하면 막 태어난 어린아이에게 10단위의 고유번호를 부여, 일생동안 그 번호만 제시하면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결국 일본판 주민등록번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프라이버시권의 심각한 침해를 우려하는 일본 국민들에 의해 심한 반발과 저항에 부딪여 과연 시행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4-5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도입에 저항하는 필리핀 국민들

최근 필리핀에서는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을 놓고, 정부와 인권단체간의 공방전이 새롭게 펼쳐지고 있다. 이 계획은 우리의 전자주민카드제도와 거의 흡사하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17세 이상의 필리핀 성인남녀는 기존의 사회안전 및 세금관련 신분증, 운전면허증, 무기소지면허증, 회사신분증 등을 하나로 통합한 전자주민증을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 그러나 필리핀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어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다. 필리핀 인권연합위원회 등 인권단체와 사회단체들은 이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정투쟁을 준비하고 있고, 국민들 또한 이 제도의 도입에 상당한 의구심과 반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제 5 부

공대위는 이렇게 주장한다

1. 전자주민카드 시행계획을 철회하라.

1. 현재의 신분증명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라.

주민등록번호는 폐지하거나 아무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일련번호체제로 변경되어야 한다. 새로운 신분증에는 사진, 이름, 주소만을 기재하고, 지문, 본적, 호주 등 신분확인에 관계없는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1.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통합법률을 제정하라.

1. 정부주도로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가정보화계획을 프라이버시 보호의 국제기준에 맞추어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후에 시행하라.

1. 안기부, 경찰청 등 공안망의 정보파일을 공개하라.

1.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등본 등을 요구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라.

민간부분에서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등본 등을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하라.

전자주민카드 10문 10답

Q1 : 주민등록증과 같은 강제적인 신분증명제도가 있는 나라는 얼마나 되나?

A : 약 100여개 국가에서 정부가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지만 그 나라 국민임을 입증하는 최소한의 내용만이 수록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민 전체를 분류하는 주민등록번호도 없을 뿐아니라, 본적지, 병역사항, 지문, 거주지변경내용도 수록되지 않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선전국의 경우 아예 주민등록증과 같이 신분증명만을 목적으로 하는 증명서는 국가에서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Q2 : 그러면 외국에서는 신분증명을 어떻게 하나?

A :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카드로 신분증명을 대신하고, 독일은 건강카드로, 호주는 의료카드로 신분증명을 대신합니다. 즉, 국가에서 서비스제공을 목적으로 발급한 증명서로 신분증명을 대신하고 있고 신분증명만을 목적으로 하는 증명서는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와 국가에 의한 감시통제의 우려로 인해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Q3 : 전자주민카드 시행상의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가?

A : 정부는 현재 존재하는 증명서의 발급업무만을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주민카드제도 실시에 따라 법률을 재정할 필요가 없고,

각 증명서들의 발급과 서식만 개정하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증을 비롯한 7가지 증명과 각 증명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의 모든 정보가 하나의 카드로 통합되는데 발급과 서식 업무의 개정으로 전자주민카드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또한 카드 겉면에 주민등록증기재사항외에 운전면허, 의료보험증의 기본사항이 전부 기재되므로 이를 위한 근거 법률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통합신분증명제도는 실시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Q4 : 전자주민카드제도 시행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효과는 사실인가?

A : 연간 1억 7천만통의 증명발급비용과 이에 필요한 공무원인력감축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사업에 3천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고, 전자주민카드에 내장되는 반도체칩에 3천억원, 비표처리비용이 1천 8백억원, 사진 스캐닝 1천 8백억원, 카드판독기 제작 500억원, 플라스틱 원판제작에 17억원의 비용이 들어 갑니다. 여기에 휴대용 단말기, 무인발급기, 주전산기 설치 및 관리비용까지 계산한다면 약 1조원이 넘는 돈이 들어갈 전망입니다.

여기에 시스템의 유지 보수 및 관리비용이 계속적으로 투여되어야 하고, 이에 필요한 공무원들을 신규채용해야 하는 등 실제적인 행정비용 절감효과는 기대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Q5 : 전자주민카드 실시에 따라 국민부담액이 얼마나 증가 하게 되나?

A : 정부는 1조원 이상 드는 비용 모두 고스란히 국민들 부담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때문에 17세이상의 모든 성인남녀 3천 4백만명은 개인당 3만원의 돈을 지불하고 전자주민카드를 발급받는 결과가 됩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건수가 연간 300만건-주민등록증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전자주민카드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재발급 전수는 급증할 것이다.-임을 감안해 볼 때, 국민에게 지워지는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 입니다.

즉, 정부는 전자주민카드사업을 위해 1조원이나 되는 돈을 발급사업에 참여한 삼성전자, 현대전자, LG정보통신, 한화종합화학, LG화학 등의 국내 재벌기업들과 외국의 자본과 재벌에 고스란히 바쳐주고, 이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Q6 : 전자주민카드 시행으로 국민편익이 증대된다고 하는데?

A : 국민의 불편은 우리사회의 불필요하게 많고 복잡한 신분증명제도와 잘못된 사회적 관행에 있습니다. 이를 뜯어 고치지 않고 통합시켜 놓는다고 나아질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크레킹(전산망불법침입)의 문제로 인해 전산기에서 지역으로 뻗어나가는 지선이 각 동사무소까지만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전자주민카드시대에도 여전히 등,초본을 발급을 위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아야 하고, 졸업증명서를 발급을 위해 출신학교를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상의 문제점 즉, 비밀번호를 외워야하며,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경우 동사무소에서 재확인 작업을 거쳐야 하는 불편, 그리고 시스템장애시에 증명서 발급 업무가 완전히 중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오히려 불편하기까지 한 일입니다.

Q7 : 안기부 등 공안기관이 주전산기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정부의 주장은 사실인가?

A : 국가안전기획부법 시행령 5조를 보면 "암호자재라 함은 통신보안을 위해 통신문의 내용을 보호할 목적으로 문자, 숫자, 기호 등의 암호로 만들어진 문서나 기구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암호자재는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제작해 필요한 기관에 공급하되 필요한 경우 암호자재의 사용기관으로 하여금 인가하는 암호체계의 범위안에서 암호자재를 제작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해 안기부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서의 암호사용에 관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기부가 전산센터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정부의 주장은 허구이며, 안기부 등의 공안기관은 전산센터의 모든 자료를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암호자재의 취급이 안기부 고유의 법적권한임을 인정한다할지라도 추진기획단에 암호전문가가 아닌 안기부대공담당이 참석한다는 사실은 감시와 통제의 목적을 더욱 확연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Q8 : 정보유출의 가능성은 없나?

A : 가장 크게 우려되는 점은 시스템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에 의한 해킹입니다. 망건설과 주전산기 사업은 국내의 기술력으로는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기업에 의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고 이들은 시스템의 모든 구조를 알기 때문에 이들이 좋지 못한 의도로 크레킹을 시도한다면 다른 사람은 알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업체들뿐아니라 사업에 참여한 하청기업들 또한 시스템에 접근하는 일이 아주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시스템 업체들 사이에서 상식으로 통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또한 시스템과 보안상의 문제는 제쳐두고서라도 사람의 손에 의한 유출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정보의 유출은 크레킹뿐만아니라 정보의 관리자들에 의해 유출이 오히려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전산화된 자료의 크레킹에 의한 유출과 내부공모자들에 의한 유출사례의 비율이 3 : 7이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Q9 : 프라이버시보호권이란 무엇이며 국내의 프라이버시보호수준은 어느정도인가?

A : 경제개발기구(OECD)의 개인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권고안은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정보수집, 정보공여를 거부할 권리, 비밀정보금지, 분명한 수집목적, 법에 따른 정보수집, 자기정보열람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을 거부한다면 처벌받게 되어 있고, 안기부에 개인비밀정보파일이 사실상 존재하며, 전자주민카드제에 따라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것은 결코 수집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본다면, 한국은 프라이버시보호에 관해 아주 열악한 위기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10 : 전자주민카드제도에 대해 공대위의 입장은 무엇인가?

A : 결론적으로 말하면 통합전자주민카드제도는 정부의 선전과는 달리, 국민불편과 행정비용이 오히려 가중될 뿐아니라,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의 소지가 높고, 21세기형 정보화사회의 감시통제기제로 활용될 것이라는 점에서 공대위는 이의 도입을 전면 반대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동시에 주장합니다.

첫째, 주민등록증을 비롯한 국내의 신분증명제도의 모순을 개선하기 위한 신분증명제도의 간소화와 신분증명의 사회적 관행이 국제적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정부와 사회각계가 노력할 것 둘째,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통합적인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법안의 제정 셋째, 감시통제의 우려가 있는 공안전산망을 공개하고,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처를 취할 것 등입니다.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 는

■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을 막고,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모임입니다.

■ 개인정보유출의 피해사례와 정부나 기업에 의한 불법적인 개인정보유출의 고발접수를 받습니다.

■ 전자주민카드발급을 거부하는 불복종운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후원회원 가입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연락처

전화 : (02) 879-0871 FAX : 874-2935
통신 : 나우누리, 천리안, 하이텔, 참세상 kijoongv

◀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

☞ 공대위에서 매월 발행하는 신문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공대위에서 개최하는 모든 행사에 초청합니다.
☞ 전자주민카드의 문제점에 대한 자세한 자료와 정보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구좌로 후원금(1만원 이상)을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은행 167-07-123558 홍석만(전자카드)
국민은행 812-01-0134-240 홍석만(전자카드)